

## 경기아트센터 정관

제정	2004. 3. 10
개정	2008. 7. 10
개정	2008. 12. 18
개정	2009. 10. 29
개정	2009. 12. 22
개정	2010. 8. 10
개정	2010. 10. 21
개정	2011. 2. 25
개정	2011. 7. 14
개정	2013. 1. 4
개정	2013. 12. 26
개정	2014. 5. 28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2. 28
개정	2017. 3. 30
개정	2017. 9. 25
개정	2018. 6. 8
개정	2019. 2. 28
개정	2019. 4. 8
개정	2019. 5. 3
개정	2019. 12. 27
개정	2020. 2. 28
개정	2020. 11. 20
개정	2021. 2. 25
개정	2021. 3. 16
개정	2022. 2. 28
개정	2022. 12. 26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9.10.29, 2020.02.28>

**제2조(소재지)** ① 아트센터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인계동)(구 인계동 1117번지)에 둔다. <개정 2013.1.4, 2020.02.28>  
 ② 아트센터의 분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89(보라동)(구 보라동 312번지)에 둔다. <개정 2008.7.10, 2013.1.4, 2020.02.28>

**제3조(목적)** 아트센터는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이하 “도”라고 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20.02.28>

**제4조(사업)** 아트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개정 2009.10.29, 2020.02.28>

1.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2. 예술단의 운영 :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제5조(수익사업)** ① 아트센터는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아트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29, 2020.02.28>

##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아트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10.29, 2011.2.25, 2013.1.4., 2015.12.28., 2019.5.3., 2020.02.28>

1. 이사장 1인
  2. 사장 1인
  3. 삭제
  4. 이사 1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사장·근로자 대표(노동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 ② 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3.12.26, 2015.12.28>

**제6조의 2(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하되 제6조의 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1. 삭제
2. 도 문화예술관련 담당국장
3. 도 문화예술관련 담당과장[본조신설 2014.12.30, 개정 2017.9.25., 개정 2022.2.28.]
- ② 노동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앞서 재직근로자(1년 이상)를 대상으로 근로자 투표 절차를 거쳐 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
- ③ 전항에 따른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5.3.>

  1. 선거관리위원장 : 추천위원회 위원 중 호선
  2. 선거관리위원 : 노사대표 각 3명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5.3.>

**제6조의 3(임원추천위원회)** ① 아트센터는 임원 임명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③ 아트센터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도의 공무원(도의원을 포함)은 추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⑥ 아트센터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와 도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⑧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 및 구성시기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9.25]<개정 2020.02.28>

**제6조의 4(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 2 제2 항에 따른 선거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5.3.>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트센터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 신설 2017.09.25]<개정 2020.02.28>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10, 2017.9.25>

② 삭제 <개정 2008.7.10, 2017.9.25>

**제7조의 2(사장)** 사장은 아트센터를 대표하여 아트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5, 2020.02.28>

② 삭제 <개정 2017.9.25>

③ 삭제 <개정 2017.9.25>

④ 삭제 <개정 2017.9.25>

⑤ 삭제 <개정 2017.9.25>

⑥ 삭제 <개정 2017.9.25>

⑦ 삭제 <개정 2017.9.25>

⑧ 삭제 <개정 2017.9.25>

**제7조의3(예술단장) 삭제** [본조신설 2009.10.29, 개정 2015.12.28]

**제8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08.7.10, 2009.10.29, 2009.12.22, 2010.8.10., 2013.1.4., 2021.2.25., 2022.2.28.>

1. 이사장

2. 삭제 <2022.2.28.>

3. 도 문화예술관련 담당국장

4. 사장

5. 삭제 <2013.1.4.>

6.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021.2.25.>

③ 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 및 근로자 중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2017.9.25., 2019.5.3.>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감사)** ① 감사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 1인과 도의 문화예술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4, 2017.9.25, 2020.02.28>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트센터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아트센터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7.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의 연임을 위해서는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5., 2019.5.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과 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결과<개정 2010.8.10, 2015.12.28, 2017.9.25>

③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한 때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선임된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5.12.28>

**제11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의 해임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추진

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1조의 2(임원의 직위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 및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② 직위해제된 자는 임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임원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6.8.]

**제12조** 삭제 <2008.7.10>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4>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장, 사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 및 노동이사는 제외한다.<개정 2019.5.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3조의 2(임기만료 사장에 의한 직무대행)** 경기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사장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 제3장 이사회

**제14조(구성)** ① 아트센터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29, 2013.1.4>

**제15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2회 이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개정 2013.1.4>

3.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7.14>

② 이사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이사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위임장에 의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3.1.4>

**제17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9.25, 2020.02.28>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인 추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아트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아트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아트센터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개정 2020.02.28>

**제20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장 집행기관 등

**제21조(조직)** 아트센터의 정원은 379명이며, 4본부 2실 16팀 4예술단으로 한다. 그 외의 사항은 직제와 정원규정에 의한다.<개정 2015.12.28., 2019.4.8., 2019.12.27., 2020.02.28., 2021.03.16., 2022.12.26.>

**제22조** 삭제 <2008.7.10>

**제23조(직원 및 단원의 임면)** ① 아트센터의 직원 및 단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1.4., 2020.02.28>

② 직원과 단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4>

**제23조의 2(예술감독)** ① 예술감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예술감독의 채용절차는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등에 따른 단원의 채용절차를 적용한다.<개정 2017.4.3., 2019.2.28.>

② 예술감독은 당해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예술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임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되, 임기는 사장이 정한다.

④ 예술감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예술감독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경영평가에 다른 해임사유 발생 시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야기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5.12.28]<개정 2019.2.28.>

**제24조(자문기구)** 아트센터의 사업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20.02.28>

##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① 아트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02.28>

② 기본재산은 아트센터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관계기관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개정 2020.02.28>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및 제27조의 2에 의한 세출결산잉여금 중 이월금(이하 “이월금”이라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4>

④ 아트센터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개정 2020.02.28>

**제26조(재산의 관리)** 아트센터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02.28>

**제27조(수입과 지출)**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출연금, 지원금, 기타수입, 이월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4, 2020.02.28>

**제27조의2(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한다. [본조신설 2013.1.4]

**제28조(회계연도)** 아트센터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에 준한다.<개정 2020.02.28>

**제29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8, 2020.02.28>

②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5.28]

③ 아트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항신설 2014.5.28]<개정2020.02.28>

**제30조(결산)** ① 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0.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의 제한)** 이사장, 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2, 2010.10.21, 2011.7.14, 2015.12.28>

##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

**제34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4>

② 제21조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3.1.4>

③ 아트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재정 및 폐지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2.30]<개정2020.02.28>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35조(공시)** ① 아트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을 준용하여 경영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시한다.

② 아트센터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당해 아트센터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게재한다.

③ 아트센터는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한 정보를 아트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0.11.2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최초 임기일은 위촉일로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 발기인 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부 칙 <2008.07.1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12.18>

이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10.29>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12.22>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08.10>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10.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의 보수는 임명일로부터 지급한다.

**부 칙 <2011.02.25>**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7.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장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01.04>**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6>**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5.28>**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0>**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30>**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5>**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08>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8>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08>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03>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족 <2019.12.27>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다른 규정 및 내규의 “경기도문화의전당”을 “경기아트센터”로, “전당”을 “아트센터”로, “경기도립예술단”을 “경기도예술단”으로, “경기도립극단”을 “경기도극단”으로, “경기도립무용단”을 “경기도무용단”으로, “경기도립국악단”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로 일괄 개정한다.

부 칙 <2020.11.20>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25>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6>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28>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6>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